

##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6-228
----------	-------

제출일시 : 2012. 10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개정이유

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非의무관리대상)의 안전관리에 따른 시예산을 지원함.(안 제4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범위를 둔다(안 제4조의2)

다. 보조금 지원 신청시 “실무 검토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라.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함(안 제29조의2)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민영주택등 우선공급)

### 예산수반상황

- 동두천시 주택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같은 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시비 50%\_최대 2,500만원, 자부담 50%)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입법예고 기간 : 2012년09월12일 ~ 2012년10월02일)

부서협의결과

- 사회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기획감사실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2항 중 “시설”을 “공동주택 단지”로 한다.

- 5.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조금 지원 신청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과 보조금 교부시 적정여부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제15조부터 제29조) 다음에 제5장(제2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에 건설되어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미만일 것
-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		건 축 과
입 안 자	담당관·과 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장 경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택팀장 주 대 승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윤세 (860-240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지원범위) ① (생략) 1.~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p> <p>② ----- 시설 ----- <u>&lt;신 설&gt;</u></p> <p>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 ⑥(생략)</p>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b>5.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b> <b>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b></p> <p>② ----- <b>공동주택 단지</b> -----</p> <p>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p> <p>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p> <p>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 ⑥(현행과 같음) ⑦ 보조금 지원 신청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과 보조금 교부시 적정여부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장(제15조부터 제29조)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4장(제15조부터 제29조) (현행과 같음)</p> <p><u>제5장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u></p> <p><u>제29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 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u></li> <li><u>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에 건설되어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미만일 것</u></p> <p><u>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u></p> <p><u>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u></p>